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49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2.

발 의 자:박 정·박상혁·유동수

송옥주 · 김영환 · 정성호

정동영 · 김주영 · 김성원

김성회 · 황정아 · 김용태

이양수 · 배준영 · 이기헌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,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5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7조의2에 따른 접경지역지원기금 별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 12.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
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7

 27조의2에 따른 접경지역지원
 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)	제23조(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)
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	①
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	
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복	
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	
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	
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	
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	
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2.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
	제27조의2에 따른 접경지역지
	원기금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